

소수집단 학생 지원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신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

- ① 장애학생
- ② 외국인 유학생
- ③ 다문화가족 학생
- ④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

제3조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대학생활 지원
- ② 대학생활 및 복지 관련 지원
- ③ 도우미(멘토) 지원
- ④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

제4조(담당부서 및 지원체계) ①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학생 지원: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처
2. 외국인 유학생 지원 : 학생처, 국제교류원
3.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 지원: 학생처

②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 및 학과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,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③ 학생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
2.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학생 지원 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위원회 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